

화성시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11. (공영애 의원 등 6명)

나. 회 부 일 자 : 2022. 11. 14.

다. 상 정 일 자 :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022. 11. 24.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공영애 의원)

가. 제안사유

1) 화성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1)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2) 우수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지원 등의 조항을 신설(안 제6조)

3) 창업촉진 및 기술개발보급을 위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

4) 농촌지역개발계획의 수립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5)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복지증진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강석 전문위원)

가. 본 안건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된 사항으로,

나. 주요내용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계획의 수립 근거 마련, 우수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지원, 창업촉진 및 기술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등임

다. 도농복합도시인 화성시의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어려운 농촌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11. (배정수 의원 등 6명)

나. 회 부 일 자 : 2022. 11. 14.

다. 상 정 일 자 :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022. 11. 24.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배정수 의원)

가. 제안사유

- 1) 화성시 지역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1) 화훼의 소비 촉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2)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접수창구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강석 전문위원)

가. 본 안건은 화성시 지역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된 사항으로,

나. 주요내용은 화훼의 소비 촉진 등 지원,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접수창구 설치에 대한 근거마련에 관한 사항 등임

다. 화성시 지역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11. (장철규 의원 등 6명)

나. 회 부 일 자 : 2022. 11. 14.

다. 상 정 일 자 :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022. 11. 24.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장철규 의원)

가. 제안사유

- 1)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일상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1)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3조)
-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할 위원회 설치 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
-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 4) 실태조사 및 포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강석 전문위원)

가. 본 안건은 재난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일상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된 사항으로,

나. 주요내용으로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 심의 의결 할 위원회 설치 규정과 지원계획 수립 근거마련에 관한 사항 등임

다. 코로나19, 이태원참사 등 많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 업무 종사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조례제정을 통하여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11.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1. 14.

다. 상 정 일 자 :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2022. 11. 25. 수정가결)

2. 제안요지설명 (김윤규 기후환경과장)

가. 제안사유

1)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제7조제3항 중 “100분의 50” 을 “100분의 80” 으로 개정하여 공유지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확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강석 전문위원)

가.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된 사항으로,

나. 주요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공유지 내 환경친화적 자
동차 충전시설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개정하는 사항

다.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넘어가는 시대로, 임대료 감면
한도 확대로 인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

급이 더욱더 활발해질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원안	수정안
제7조의(충전시설 보급확대) ③ 시장은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0이상으로 하거나 임대료의 <u>100분의 80</u> 을 경감할 수 있다.	제7조의(충전시설 보급확대) ③ 시장은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0이상으로 하거나 임대료의 <u>100분의 80의 범위에서</u> 경감할 수 있다.

7. 수정안 요지 : 수정동의 발의 - 장철규 의원

○ 상위 법률과 일치시키고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집행부에 재량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 수정대비표 별첨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11.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1. 14.

다. 상 정 일 자 :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2022. 11. 25.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곽재홍 자원순환과장)

가. 제안사유

- 1)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정비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정의 삭제(현행 제2조 삭제)
- 2) 재활용가능자원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의 배출요령을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규정(안 제5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강석 전문위원)

가. 본 안건은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재활용 가능 자원의 품목과 배출요령을 정비하여 개정된 사항으로,

나. 주요내용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정의 삭제, 재활용가능자원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의 배출요령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 등임

다. 그동안 재활용 가능 자원과 불가능 자원의 혼합으로 인한 분리배출 어려움을 재활용 가능 자원의 품목과 배출요령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형성하여,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11.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1. 14.

다. 상 정 일 자 :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2022. 11. 25.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과재흥 자원순환과장)

가. 제안사유

- 1) 폐기물 종류에 따라 배출방법을 정비하고 분리수거 비해당품목의 배출요령을 신설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폐기물 종류별 배출방법 정비(안 제19조제1항, 별표 2)
- 2)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기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수정(안 제20조제2항)
- 3) 재활용가능자원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의 배출요령 신설(안 별표 2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강석 전문위원)

가. 본 안건은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분리수거 비해당품목의 배출요령 등을 신설하여 개정된 사항으로,

나. 주요내용은 폐기물 종류별 배출방법, 과태료 부과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 분리수거 비해당품목 배출요령을 개정하는 사항 등임

다. 현재 유리병, 캔, 플라스틱 등의 품목으로 분리배출을 시행하던 것을, 더 세분화 시켜서 배출요령을 신설하고, 과태료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꿈으로써,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시키고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11.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1. 14.

다. 상 정 일 자 :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2022. 11. 25.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곽재홍 자원순환과장)

가. 제안사유

- 1)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RFID)기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에서 선불제카드의 분실, 카드오류 등 사용이 불편하여 관리비에 부과 정산하는 후불제 도입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며,
- 2) 조례상 선불제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선불제와 후불제를 혼용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RFID 등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근거만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제9조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강석 전문위원)

가. 본 안건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선불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사항으로,

나. 주요내용은 선불카드로 한정되어 있던 수수료 징수 방법을 RFID 등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 등임

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RFID)기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선불제 카드로 인한 불편함을 후불제 방식 도입으로 인하여 민원을 해결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